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82
----------	-------

제출년월일 : 2022. 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21. 12. 2.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관광특구 민간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관광특구 지역 및 대외적 표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3조)
- 나.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안 제4조)
- 다. 민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추진, 지원(안 제5조 ~ 제7조)
- 라. 관광특구 법적특례(안 제8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및 제74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5. 26. ~ 6. 15.(20일)

▶ 서울마포경찰서의 의견 제출 [서울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3607(2022.6.15.)]

☞ 서울마포경찰서 주요의견

- 관광특구 지정 등 자치단체 주도의 시설(보안등 · CCTV · 도로 및 미관 개선 등) 개선 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특구 시설물 관련 계획 수립 시 마포경찰서의 범죄 통계분석 정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길 바람

☞ 마포구 의견

-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시 마포구 치안 및 범죄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마포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함

원안	수정안
<p>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p> <p>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p> <p>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u>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는 범죄예방 등에 관한 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u></p>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2022. 6.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특구 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 지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일대이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는 범죄예방 등에 관한 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민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 육성과 서비스 개선, 특화된 관광문화 정착 및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협력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민간 협력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민간 협력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특구 특화 행사 발굴 및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사업
2. 관광특구 발전을 위한 서비스 및 시설·환경 개선 사업
3. 관광특구 내 문화예술자원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4. 국·내외 관광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특구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7조(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 체계가 제6조의 민간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① 관광특구 안에서 영 제60조의 3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사용은 「서울특별시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7조(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 체계가 제6조의 민간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소요됨

4. 작성자 : 관광일자리국 관광과 정지현 (☎ 3153-8654)